

대학원학사운영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목적) 본 규정은 동서대학교 대학원(이하 "본 대학원"이라 한다)의 학사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학칙 및 학위수여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장 입 학

제 2 조(입학지원) 본 대학원 각 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고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1. 석사학위과정

- 가. 입학원서 1부(소정양식)
- 나. 졸업(예정)증명서 1부
- 다. 출신대학의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
- 라. 기타 필요한 서류

2. 박사학위과정

- 가. 입학원서 1부(소정양식)
- 나. 지도교수의 추천서 1부
- 다. 학위수여 증명서 1부
- 라. 석사학위과정의 성적증명서 1부
- 마. 기타 필요한 서류

4-1-2-2 제1장 일반대학원

3. 석·박사학위과정 공통 <신설 2015.10.01.>

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는 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,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문을 공증받아 첨부해야 한다.

제 3 조(합격자 결정) 합격여부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사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을 결정한다.

제 4 조(입학등록) 입학전형 합격자는 소정 기일 내에 등록함으로써 입학이 확정된다.

제 3 장 개강, 수강, 학점취득 및 지도교수

제 5 조(강좌개설) ① 각 전공의 주임교수는 강좌개설학기의 2개월 전에 강좌개설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동일과목은 2학기 연속으로 개설할 수 없다.

③ 한 학과목의 개강은 수강신청자가 3인 이상되어야 개강한다. 단, 대학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개강할 수 있다.

④ 필요에 따라 대학원장은 공개강좌 및 집중강의를 개설할 수 있다.

제 6 조(수강신청) 수강신청서는 매학기 개강 일주일전에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본인이 종합전산망을 통해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.

제 7 조(학점취득) ① 학생이 재적하는 전공이 아닌 전공에서 개설하는 학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국내외의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지도교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료학점의 1/2까지 인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3. 1, 2017.09.01.>

제 8 조(지도교수) ① 지도교수는 입학 후 1학기에 정함을 원칙으로 하며, 해당 전공의 주임교수의

제청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5.10.01.>

② 지도교수는 해당 학위과정의 교과목을 담당할 수 있는 본교의 교원으로서 석사과정은 조교 수 이상, 박사과정은 조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선정한다. <개정 2012. 9. 1>

③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④ 지도교수는 1인을 원칙으로 하고, 필요에 따라 공동지도교수제를 운영 할수 있으며 그 인원은 2인으로 한다.

⑤ 교수 1인당 논문지도 학생수는 학기당 석사과정 5명, 박사과정 3명 이내로 한다. 단, 대학원장이 전공의 특성을 따라 필요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0.12.13>

⑥ 지도교수는 학위논문으로 제출된 학생의 논문이 위조, 변조, 표절, 논문대필 등의 연구부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학위논문을 철저히 지도·감독한다. <개정 2010.12.13>

⑦ 연구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학생에 대한 지도교수의 자격이 상실되고, 교수업적 평가에도 반영될수 있다. <개정 2010.12.13>

제 9 조(논문연구) ① 논문연구는 학위논문 지도교수가 담당한다.

② 논문연구는 석사, 박사학위과정의 마지막 학기에 이수한다. 단, 학과 특성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17.09.01.>

제 4 장 재입학, 등록, 휴·복학 및 퇴학

제 10 조(재입학) ① 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동일과정에 재입학을 원할 때는 퇴학 또는 제적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.

② 재입학자의 퇴학 또는 제적전의 취득학점은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제 11 조(등록) ① 등록과 수강신청은 매학기초 소정기일 내에 하여야 하며,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

4-1-2-4 제1장 일반대학원

자는 제적 처분한다.

② 4학기 이상 이수자중 3학점 이하 신청자는 등록금의 1/2을, 4학점이상 신청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12 조(휴학) ① 학생이 질병, 병역, 임신·출산, 만 8세 이하의 자녀양육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 1/4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2. 6. 4, 2018.09.01.>

② 휴학원 제출시기는 매학기초 30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 부득이한 경우에는 타당한 사유를 첨부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③ 제1항의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군입대 휴학자는 휴학기간 만료전에 군복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09.01.>

제 13 조(복학)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복학원을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제대복학자는 전역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학기초 30일 이내에, 기타 복학자는 소정 등록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.

제 14 조(자퇴)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15 조(편입학) ① 편입한 자는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 학과 주임교수가 인정하는 경우 석사학위과정은 12학점까지, 박사학위과정은 18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. <개정 2015.10.01.>

② 편입학한 학생은 본교 대학원에서 2개 학기 이상을 수학하여야 한다.

제 16 조(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)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은 매년 학기초에 실시하며 시험실시에 관한 제반사항은 대학원장이 정하며 시험실시 3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

제 5 장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

제 17 조(응시자격) ① 외국어시험의 응시자격은 특별히 정하지 않는다.

②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수료학점 취득자 및 취득예정자에 한한다. <개정 2017.09.01.>

제 18 조(제출서류) 학위청구 자격취득을 위한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응시원서와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19 조(출제위원)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각 과목담당 출제위원은 본 대학교 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. 단,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이 달리 의뢰할 수 있다.

제 20 조(시험과목) ① 석·박사과정의 외국어시험은 영어, 일어, 한국어, 중국어 중 1종을 선택한다. 단 모국어는 선택할 수 없다. <개정 2016.09.01.>

② 종합시험은 응시자가 이수한 전공과목 중 석사과정은 3과목 이상, 박사과정은 3과목 이상과 부전공과목 1과목 이상을 실시한다. 단, 학과 특성에 따라 작품발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. <개정 2017.09.01.>

제 21 조(합격기준) 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은 과목당 100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. 단, 석사 및 박사과정은 외국어시험 과목 중 영어는 TOEIC 700점, TOEFL 500점 이상 취득자, 일어는 일본어능력시험 2급 이상 취득자, 불어는 DELF 2급 이상 취득자, 독어는 ZD 중급 이상 취득자, 중국어는 H.S.K 5급 이상 취득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.

② 종합시험에서 일부 낙제한 과목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재시험의 기회를 부여한다. 단, 외국어시험은 재시험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.

③ 재시험에 불합격하였을 때는 전체 종합시험 결과를 무효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종합시험 기회를 다시 부여한다.

4-1-2-6 제1장 일반대학원

제 22 조(결과보고) 대학원위원회는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의 합격여부를 심의하고, 대학원장은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6. 4>

제 6 장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운영

제 23 조(창업휴학) ① 휴학사유가 창업으로 인정될 경우 최대 1년(2학기) 휴학이 가능하다.

② 창업휴학 시 휴학신청서 1부, 사업자등록증 1부, 창업계획서 1부 등을 첨부하여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1항의 경우로 휴학하는 경우는 휴학기간에 합산하지 않는다.

[본조신설 2015. 03. 01]

제 24 조(창업결과물 사업화 지원) ① 학생창업기간에 만든 우수한 결과물에 대하여 지도교수와 학생창업자를 공동발명자로 하여 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 심의 후 동서대학교산학협력단 명의로 특허를 출원할 수 있으며,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서대학교산학협력단(국고지원금 재원 포함)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본 지식재산권으로 기술이전 또는 사업화로 인한 수입금에 대해서는 동서대학교산학협력단 기술료 배분 방식에 의거 배분한다.

③ 학생창업자, 창업동아리 활동자와 지식재산권 발명자에게는 장학생 선발 시 가산점을 부여 한다.

[본조신설 2015. 03. 01]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타 규정 개정) ① 경영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 제1항 중 ‘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’ 을 ‘학생이 질병, 병역, 임신·출산, 만 8세 이하의 자녀양육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 1/4이상’ 으로 한다. 제12조 제3항 중 ‘질병, 군입대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’ 를 ‘제1항의 사유로’ 로 한다.
② 선교복지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 제1항 중 ‘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’ 을 ‘학생이 질병, 병역, 임신·출산, 만 8세 이하의 자녀양육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 1/4이상’ 으로 한다. 제12조 제3항 중 ‘질병, 군입대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’ 를 ‘제1항의 사유로’ 로 한다.